

IMSCC 사건 대응 규약

IMSCC Incident Response Protocol

IMSCC 2026 조직위원회·아동보호복지담당

2026.02.0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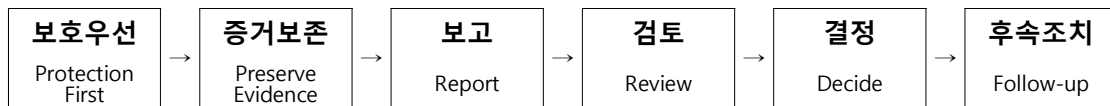
제1조(목적) 본 프로토콜은 안전·인권·윤리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경우 참가자 보호, 신속한 초기 대응, 공정한 조사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표준 절차를 정한다.

제2조(적용 사건)

괴롭힘, 차별, 성희롱,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, 폭력·위협, 미성년자 보호 우려, 개인정보 또는 촬영 관련 침해, 보복행위 및 그 밖의 안전·인권·윤리 문제가 적용대상이 된다.

제3조(현장 대응 원칙)

사건의 사실확정 이전이라도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하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.



제4조(단계별 대응)

STEP 1. 신고 접수

- ▶ 사건번호를 부여한다. 예: IMSCC-2026-SG-001
- ▶ 기록사항:
 - ☐ 신고 일시
 - ☐ 발생 일시 및 장소
 - ☐ 신고자
 - ☐ 보호대상자
 - ☐ 관련자
 - ☐ 사건 개요
 - ☐ 즉각적인 위험 여부
 - ☐ 확보된 자료

STEP 2. 즉시 안전조치

- ▶ IMSCC 사무국의 아동보호복지담당관(Safeguarding & Wellbeing Officer) 또

는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한다.

- ☐ 보호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
- ☐ 당사자 간 분리
- ☐ 해당 운영자의 현장직무 일시 중단
- ☐ 의료지원
- ☐ 보호자 또는 참가단 책임자 연락
- ☐ 통역지원
- ☐ 심리적 안정 지원
- ☐ 추가 접촉 방지

STEP 3. 증거보전

▶ 원본자료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보전한다.

- ☐ 공식 사진·영상
- ☐ 현장 CCTV
- ☐ 개인 촬영자료
- ☐ 이메일·메신저
- ☐ 참가자·목격자 진술
- ☐ 행사일정 및 담당자 기록
- ☐ 출입기록
- ☐ 관련 서류

※증거는 불필요하게 복제하거나 관계 없는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다.

STEP 4. 초기 검토

- ▶ IMSCC 사무국의 아동보호복지담당관(Safeguarding & Wellbeing Officer)은 신고의 성격과 긴급성을 검토하여 윤리·참가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▶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관계 법령상 신고·통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조사보다 관계기관 신고가 우선될 수 있다.

STEP 5. 조사

- ▶ 윤리·참가자보호위원회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음 자료를 검토한다.
- ▶ 신고인 진술, 보호대상자 진술, 상대방 진술, 목격자 진술, 사진·영상·전자자료 및 기타 객관적 자료.
- ▶ 미성년자에 대한 진술을 받을 때에는 반복적인 진술요구나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한다.

STEP 6. 시간기준

- ▶ IMSCC 일반규정(General Regulations)에 따라 원칙적으로:

- ☐ 72시간 이내: 초기 대응상황 안내
- ☐ 14일 이내: 중간 진행상황 안내
- ☐ 30일 이내: 조사결과 통지

※ 사건의 복잡성이나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예상일정을 안내한다.

STEP 7. 의견제출

- ▶ 최종 불이익 처분 또는 제재 전에 당사자에게 주요 사실과 쟁점을 알리고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.

STEP 8. 결정 및 조치

- ▶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☐ 조치 없음
 - ☐ 교육 또는 주의
 - ☐ 공식 경고
 - ☐ 업무 또는 직무배제
 - ☐ 행사장 퇴장
 - ☐ 참가 또는 수상자격 취소
 - ☐ 일정기간 또는 향후 IMSCC 참여제한
 - ☐ 재발방지교육
 - ☐ 관계기관 신고 또는 연계

STEP 9. 결과통지 및 불복

- ▶ 최종 제재 대상자는 General Regulations에 따라 독립된 재심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STEP 10. 사후관리

- ▶ 사건 종료 후 조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:
 - ☐ 피해·보호대상자 지원
 - ☐ 운영절차 개선
 - ☐ 현장교육 강화
 - ☐ 시설 또는 촬영체계 개선
 - ☐ 규정 및 매뉴얼 개정
 - ☐ 재발방지대책
 을 실시한다.

제5조(비밀 유지)

사건정보는 보호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공유한다.

단, 법령상 신고의무 또는 적법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